

# 고성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

(의안번호 제670호)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12. 21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고성군수  
나. 회부일자 : 2000. 12. 22  
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00. 12. 27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산업건설위원회 상정·수정의결

### 2. 제안이유

- 도로부속물인 가로수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조경시설물의 효율적 관리·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### 3. 주요골자

- 가.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하여 녹지·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1조)  
나. 적용범위는 건축물의 조경시설, 공동주택단지의 조경시설과 녹지지대 및 가로수 등 공공용 수목에 대하여 적용함.(안 제2조)  
다. 가로수는 관리청에서 계획적으로 심고 이를 유지·관리하도록 함.  
(안 제11조)  
라. 가로수는 주간 등 상단부를 자르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승인을 받아 조치하도록 함.(안 제12조)  
마. 가로수에 대하여 피해 등 훼손한 자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.  
(안 제16조)  
바. 출향인사 및 향우회 단체 등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수목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심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기념표지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7조)

사. 녹지공원 또는 가로변 등에 초화류·나무 등을 심을 수 있는 장소제공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을 명예 감시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20조)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 제정안은 도로법 제3조에 의한 도로 부속물인 가로수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조경시설물의 효율적 관리·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
-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에서 원인자 부담금, 훼손자 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
- 경상남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을 거쳐 시군조경시설관리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2000.1.1.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시달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동 조례안을 작성한 것으로 동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- 다만, 안 제16조제3항 관련 별표의 조경시설 훼손자부담금, 원인자부담금 각 항목별 산정기준의 근거와 우리군의 지역실정에 맞는지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 전반적인 용어 및 자구수정 사항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였음.

#### 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기념식수자의 표지석 규격을 정할 필요는 없는지
- 답 : 표지석의 규격 등은 시행규칙에서 정비하도록 하겠음.
- 문 : 가로수 식재시 2열로 심는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닌지
- 답 : 현지 여건에 따라서 공지가 넓고 여유가 있는 곳에 한하여 2 열로 심을 수도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음.
- 문 : 가로수의 가해자에게 여태까지 변상금을 받고 있었는데도 조례에 명시하는 이유는
- 답 : 자체적으로 조례가 없어 여러 상위법의 근거로 변상금을 부과 징수 하였으나 조례에 명시하여 명확히 하기 위함.

- 문 : 기념식수자에 대한 기념 표지석을 설치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위화감 조성의 원인제공은 되지 않을까 두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
- 답 : 표지석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, 탄력적으로 무리가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하였음.

## 6. 토 론

- 수정동의 : 기념식수자에 대한 기념표지석 설치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위화감 조성의 원인제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"제17조제2항"의 "기념표지석을 설치" 다음에 "하데 기증일자 및 기증자의 성명만을 표기"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동의 요청

## 7. 심사결과

- 2000. 12. 2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

의안번호	제 670 호
의결년월일	2000. 12. . (제 83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## 고성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자	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
제안년월일	2000. 12. .

# 고성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670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0. 12. .

제안자 :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

## 1. 수정사유

- 기념식수자에 대한 기념표지석 설치에 따라 일반군민들의 위화감 조성의 원인제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성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의 내용중 “제17조제2항”의 “기념표지석을 설치” 다음에 “하데 기증일자 및 기증자의 성명만을 표기”를 삽입하여 원안을 수정코져 함.

## 2. 주요골자

- 군수는 출향인사·향우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 등 독지가가 고향사랑 정신으로 본인이 부담하여 나무를 직접 또는 위탁 식재하고자 할 경우 식재장소 및 수종선택 등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과 참여자에 대한 애향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 표지석을 설치하데 기증일자 및 기증자의 성명만을 표기할 수 있다.  
(안 제17조제2항)

## 3. 의결요청(안) : 덧붙임

# 고성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고성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## 제17조(녹화지원) ① 생략

②군수는 출향인사·향우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 등 독지가가 고향사랑 정신으로 본인이 부담하여 나무를 직접 또는 위탁 식재하고자 할 경우 식재장소 및 수종선택 등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과 참여자에 대한 애향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 표지석을 설치하되 기증일자 및 기증자의 성명만을 표기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